

2019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I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9. 5. 29.(수) 14:00 ~ 16:20
- ☐ 장소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목련)

2. 참석현황

- ☐ 참석이사 : 전수안(이사장), 김형준, 남궁근, 박백범(代 김규태 고등교육정책 실장), 박용만, 박현애, 오세정, 여정성, 이준구, 정진성, 지은희, 최창원, 홍기현 (이상 13명)
- ☐ 불참이사 : 구윤철, 권오규 (이상 2명)
- ☐ 참석감사 : 이병률, 황성식 (이상 2명)
- ☐ 배 석 : 강준호(기획처장, 간사), 신석민(교무처장), 최재필(시흥캠퍼스 추진 본부장), 박용수(사무국장)

3. 회의안건

☐ 보고사항

- 제1호. 2018년 내부감사 결과 및 2019년 감사계획
- 제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과세 대응방안
- 제3호. 서울대학교 (가칭)시흥병원 설립 관련 진행사항
- 제4호. 총장선출제도 개선 관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 심의·의결사항

제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제2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제3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신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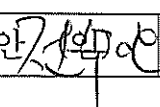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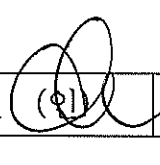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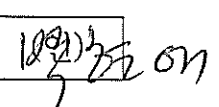
제4호. 「대학혁신센터」 설립 및 관련 규정 제·개정(안)

제5호. 2018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제6호.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평의원회 의결요청」 사안 결정(안)

□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III 회의 내용

1. 개회

-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2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강준호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보고 사항

제1호. 2018년 내부감사 결과 및 2019년 감사계획

- 이병률 상근감사가 2018년 내부감사 결과 및 2019년 감사계획을 보고함
 - 2018년 내부감사
 - 실시 기관 : 종합감사(5개), 특정감사(4개)
 -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징계 6건, 경고 5건, 주의 1건
 - 행정상 조치 : 경고 7건, 주의 7건, 통보 22건, 시정 11건
 - 2019년 내부감사 실시기관 : 약학대학 등 9개 기관 예정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3 -

제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과세 대응방안

- 강준호 기획처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과세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함
- 법인화('11. 12. 28.)이후 점증하고 있는 세금부담 현황 및 국립대학법인으로서 비과세 지위 회복의 당위성에 대해 보고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을 보고함

제3호. 서울대학교 (가칭)시흥병원 설립 관련 진행사항

- 최재필 시흥캠퍼스 추진본부장이 서울대학교 (가칭)시흥병원 설립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함
-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보고하고, 시흥시 등과 체결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2016년 제2차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가칭)시흥병원 설립 진행사항을 보고함

제4호. 총장선출제도 개선 관련

- 강준호 기획처장이 총장선출제도 개선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함
- 평의원회가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대해 학내 의견을 수렴하여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과 협의한 내용(①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학생 1명 포함, ② 총장추천위원회의 정책평가(25% 비중)기능 삭제)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보고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3. 심의의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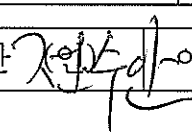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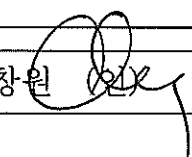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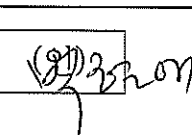
제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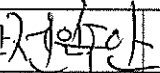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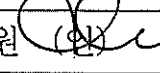
- 강사 제도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사항(교원 지위 부여, 임용 절차 규정 등)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에 반영함
 -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고(제31조제1항) 적용범위 규정(제31조제3항), 강사는 제32조(교원의 인사) 및 제33조(교원인사위원회)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으로 봄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강사의 신규·재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제33조제1항)
 - 고등교육법에 맞추어 부칙 시행일 및 적용례 신설(부칙 제1조 및 제2조)
- 「사립학교법」 제62조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정관에 반영함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외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수를 11명으로 변경함(제35조제2항)

□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1조(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u>조교수</u>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u>조교수, 강사</u>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강사를 교원에 포함(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 · 강사를 교원으로 보는 범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제32조,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으로 본다.	위를 교원의 임용에 관한 조항으로 한정
제32조(교원의 인사) (생략)	제32조(교원의 인사) (현행과 같음)	
제33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1. 교수, 부교수, <u>조교수 등의 신규임용,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u> 에 관한 사항 <신 설> 2. 부총장, 학(원)장 등 임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33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1. 교수, 부교수, <u>조교수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u> 에 관한 사항 2. <u>강사의 신규채용, 재임용에 관한 사항</u> 3. 부총장, 학(원)장 등 임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 ‘등’ 삭제 · 신규채용, 재임용 용어 통일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강사에 관한 사항 신설(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가목)
제35조(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u>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교원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u>부총장을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외부위원 위촉 근거 반영 · 위원 수를 11명으로 변경
<신 설>	<u>부칙(제0000호, 2019. 0. 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u>	· 고등교육법에 맞추어 부칙 시행일 및 적용례 신설

간 서명 이사장 전주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현 행	개 정(안)	비 고
	<u>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강사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은</u> <u>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u> <u>강사부터 적용한다.</u>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심의·의결사항 주요내용

- 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의기능 강화
 - 교육의 기본적 방향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위원장 추가하고, 입학 정책에 관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보직자를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 당연직 위원으로 입학본부장, 국제협력본부장 추가(제39조제2항)
 - 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변경(제39조제2항)
 - 위원장을 교육부총장과 임명·위촉된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제39조제2항)
 - 심의사항에 '입학정책 및 인재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39조 제3항제2호)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 제정 근거 마련(제39조제6항)
- 강사 제도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사항(교원 지위 부여, 임용 절차 규정 등)을 「서울대학교 학칙」에 반영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추인사항 주요내용

■ 협동과정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전공 폐지

- 협동과정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전공 삭제([별표3]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 개정(안)

[본문 및 부칙]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9조(교육위원회) ①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방향 등 교육활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u>기초교육원장</u> 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교육부총장이 된다.</u>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과과정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설정에 관한 사항 <u><신 설></u> 2. <u>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원칙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u> 3. <u>학과(부)별 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u>	제39조(교육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총장, <u>기초교육원장</u> , 교무처장, 학생처장, <u>입학본부장</u> , <u>국제협력본부장</u> 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u>교육부총장과 임명·위촉된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u>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u>2. 입학정책 및 인재육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u> 3. <u>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원칙 및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u> 4. <u>학과(부)별 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u>	· 당연직 위원 순서 변경 및 추가 · 위원 수 변경 · 공동 위원장 운영 근거 추가 · 심의사항으로 입학정책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호 번호 변경 · 호 번호 변경 · 호 번호 변경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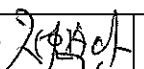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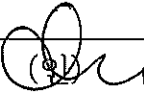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비 고
기 위한 사항 ④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u><신 설></u>	기 위한 사항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u>	· 별도 규정 제정 근거 추가
제4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생략)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u>학(원)장</u>·자유전공학부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과 교수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u>조교수 등의 신규임용, 재계약임용</u>,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u><신 설></u> 2. 부총장, 학(원)장 등 임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 ⑦ (생략)	제4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u>대학원장·학(원)장</u>·자유전공학부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과 교수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u>조교수의 신규채용, 재임용</u>,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2. <u>강사의 신규채용, 재임용에 관한 사항</u> 3. 부총장, 학(원)장 등 임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 ⑦ (현행과 같음)	· 당연직 위원에 대학원장 추가 · ‘등’ 삭제 · 신규채용, 재임용 용어 통일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에 강사에 관한 사항 신설(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가목)
<u><신 설></u>	<u>부칙(제0000호, 2019. 0. 0.)</u> <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u>	· 고등교육법에 맞추어 부칙 시행일 및 적용례 신설

간 서명 | 이사장 전수안 (인) | 이사 최창원 (인) | 이사 박현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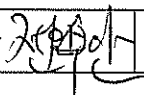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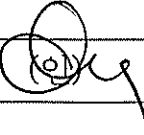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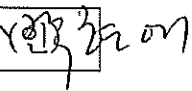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비 고
	<u>정규정 중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별표3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u> <u>제2조(강사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u>	· 폐지전공에 대한 적용일 명시

[별표 3] (일부 발췌)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서 울 대학교	총 계	2,632	총계	2,427	서 울 대학교	총 계	2,632	총계	2,427	
일 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5계열 72과(부) 31협동과정)	1,743	박사학위과정 (5계열 73학과(부) 32협동과정)	2,344	일 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5계열 72과(부) 30협동과정)	1,743	박사학위과정 (5계열 73학과(부) 31협동과정)	2,344	협동 과정 수 변경
	협동과정 (31전공)		협동과정 (32전공)			협동과정 (30전공)		협동과정 (31전공)		협동 과정 수 변경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기록학전공		기록학전공			기록학전공		기록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여성학전공		여성학전공			여성학전공		여성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유전공학전공		유전공학전공			유전공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계산과학전공		계산과학전공			계산과학전공		계산과학전공		
	생물물리및 화학생물학전공		생물물리및 화학생물학전공			생물물리및 화학생물학전공		생물물리및 화학생물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바이오엔지니 어링전공		바이오엔지니 어링전공			바이오엔지니 어링전공		바이오엔지니 어링전공		
	기술경영·경 제·정책전공		기술경영·경 제·정책전공			기술경영·경 제·정책전공		기술경영·경 제·정책전공		
	해양플랜트엔 지니어링전공		해양플랜트엔 지니어링전공			(삭 제)		(삭 제)		전공 폐지
	우주시스템전공		우주시스템전 공			우주시스템전공		우주시스템전 공		
	농림기상학전공		농림기상학전 공			농림기상학전공		농림기상학전 공		
	농생명 유전체학전공		농생명 유전체학전공			농생명 유전체학전공		농생명 유전체학전공		
	미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글로벌교육 협력전공		글로벌교육 협력전공			글로벌교육협 력전공		글로벌교육 협력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의료정보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조경학전공					조경학전공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현 행					개 정(안)					비고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대학원과정 학과(부)전공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정원	
	줄기세포생물 학전공		줄기세포 생물학전공			줄기세포생물 학전공		줄기세포 생물학전공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및 추인함

제3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신설(안)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 및 도메인 사이언스 배경을 갖춘 고급 데이터사이언스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함
 - 설립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1개 학과)
 - 입학정원: 총 정원 55명(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5명)
 - 이수학점: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 설립시기: 2020학년도 1학기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4호. 「대학혁신센터」 설립 및 관련 규정 제·개정(안)

□ 주요내용

-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서울대 정책 기획을 위하여 「대학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그 근거를 학칙에 반영하며, 센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학혁신센터 설립(안) 개요〉

□ 추진배경

- 정부정책의 한계 속에서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비전 수립, 대학 혁신 및 국·공립대 협력 강화 등 서울대의 책무성 이행을 위해 “대학혁신센터” 설립 추진
- 아울러, 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자율적 내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우수대학으로의 도약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내용

- 명칭: 대학혁신센터(기획부총장 소관)
- 목적: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서울대 정책 기획
- 조직: 2부 1팀(대학정책부, 데이터분석부, 혁신지원팀)
- 사업내용

추진방향

- ❖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비전 제시 및 방향 재정립을 통한 정부정책 선도
- ❖ 서울대의 자율적 내부혁신을 통한 글로벌 우수대학으로의 도약
- ❖ 서울대와 국·공립대 간 협력기반 내실화

추진전략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	---------	------------	--------

① 고등교육 미래비전 수립 및 대학 혁신 추진

- 고등교육의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 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 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②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

- 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전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의결함

- 「대학혁신센터」 설립(안)과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관련 규정(안)*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관련 규정: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안), 대학혁신센터 규정(안)

- 수정 사항 : 내부조직(2부 1팀) 중 '데이터분석부'는 '데이터통합관리부'로 명칭 변경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보직교수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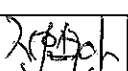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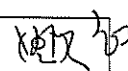
제5호. 2018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 주요내용

○ 세입결산액 : 8,895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추경액 (b) ¹⁾	예산현액 (A=a+b)	세입액 (B)	비율	증 감 (B-A)	정수율	2017 세입액
합 계		7,972	157	8,129	8,895	100.0	767	109.4	9,018
본 예	정부출연금수입	4,371	-	4,371	4,371	49.1	-	100.0	4,527
	등록금수입	1,895	-	1,895	1,846	20.7	△49	97.4	1,877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구 분		예산액 (a)	추경액 (b) ¹⁾	예산현액 (A=a+b)	세입액 (B)	비율	증 감 (B-A)		2017 세입액
							정수율		
산	교내 타회계 전입금	177	-	177	180	2.0	3	101.7	142
	교육 부대 수입	138	-	138	157	1.8	19	113.8	167
	유형자산매각대 ²⁾	-	-	-	1	0.0	1	172.1	1
	전년도 이월금	165	-	165	429	4.8	264	260.0	381
	부설 학교 수입	14	-	14	13	0.1	△1	92.9	14
	소 계	6,760	-	6,760	6,997	78.6	237	103.5	7,109
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75	163	238	231	2.6	△7	96.7	251
	자치단체보조금	-	34	34	33	0.4	△1	97.1	164
	전년도 이월금	-	-	-	115	1.3	115	-	28
	소 계	75	197	272	379	4.3	107	138.8	443
수입 대체	수 입 대 체 경 비	1,137	△40	1,097	1,272	14.3	176	116.1	1,256
	전년도이월금(자금순이월)	-	-	-	247	2.8	247	-	210
	소 계	1,137	△40	1,097	1,519	17.1	423	138.6	1,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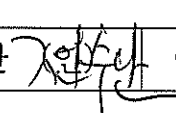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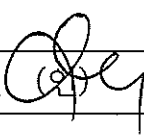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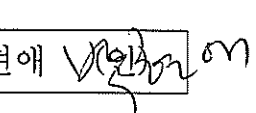
※ 등록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국가장학금(129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

○ 세출결산액 : 8,27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변동상황			예산현액 (A=a+b+c+d)	세 출 액			6) 명시 이월 (C)	예산 잔액 (D=ABC)	
			전년도 이월 (b)	추경액 (c)	이전용액 (d)		지출액 (e)	5) 사고 이월(f)	계 (B=e+f)			
총 계		7,972	558	157	-	8,687	8,034	243	8,277	208	202	
대 학	본예산	인건비	3,133	-	-	174	3,307	3,267	-	3,267	-	40
		운영비	1,119	11	-	△222	908	872	4	876	-	32
		사업비	2,218	205	-	79	2,502	2,252	202	2,454	-	48
		여비비	7	-	-	-	7	-	-	-	-	7
		소 계	6,477	216	-	31	6,724	6,391	206	6,597	-	127
	보조금	국고	75	4	163	-	242	231	-	231	4	7
		자치단체	-	110	34	-	144	143	-	143	-	1
		소 계	75	114	197	-	386	374	-	374	4	8
	수입대체경비		1,137	209	△40	-	1,306	1,016	20	1,036	204	66
	합 계		7,689	539	157	31	8,416	7,781	226	8,007	208	201
부 설 학 교	본예산	인건비	154	-	-	△14	140	139	-	139	-	1
		운영비	23	-	-	2	25	25	-	25	-	-
		사업비	28	-	-	-	28	28	-	28	-	-
		시설비	78	19	-	△19	78	61	17	78	-	-
	합 계		283	19	-	△31	271	253	17	270	-	1

※ 본예산 및 국고보조금에 국가장학금(129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 (A)	전기 (B)	증 감(A-B)
□ 자산총계 (가)	34,658	34,619	39
- 유동자산	3,199	3,157	42
- 비유동자산	31,459	31,462	(3)
□ 부채총계 (나)	3,249	3,046	203
- 유동부채	2,346	2,224	122
- 비유동부채	903	822	81
□ 자본총계 (가-나)	31,409	31,573	(164)
- 기본금	31,302	31,302	0
- 전기이월운영차액	271	243	28
- 당기운영차액	(164)	28	(192)

○ 운영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 (A)	전기 (B)	증감(A-B)
□ 운영수익 (가)	7,741	8,019	(278)
- 등록금수입	1,846	1,873	(27)
- 정부출연금·보조금수입	4,290	4,366	(76)
- 전입·기부수입	647	619	28
- 교육부대수입	816	876	(60)
- 교육외수입	129	271	(142)
- 부설학교수업료	13	14	(1)
□ 운영비용 (나)	7,905	7,991	(86)
- 인건비	4,489	4,032	457
- 관리운영비	2,425	2,921	(496)
- 학생경비	713	753	(40)
- 연구비	228	220	8
- 전출금	16	32	(16)
- 교육외비용	34	33	1
□ 운영차액 (가-나)	(164)	28	(192)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박용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독립된 감사인(한영회계법인)의 감사보고를 들음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6호.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평의원회 의결요청」 사안 결정(안)

□ 주요내용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3년 제6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평의원회 의결요청」 사안의 범위를 재확정 하고자 함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서울대학교 학칙과 관련하여 2013년 제6차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추진 사항 목록에 ⑥번을 추가하기로 함

- | |
|--|
| ① 입학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② 모집단위 통합·분리·조정에 관한 사항 |
| ③ 전공분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 ④ 협동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⑤ 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 ⑥ ‘제3장 학사운영, 제4장 학생, 별표’ 에 관한 사항 중 학사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

4. 기타사항

제2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 2019년 제4차 회의를 2019. 7. 25.(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 2019년 제5차 회의를 2019. 9. 26.(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5. 폐회

-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이사장이 오후 4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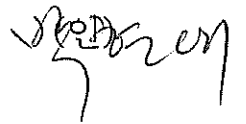
이사장 전 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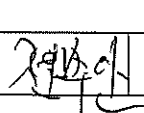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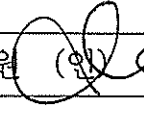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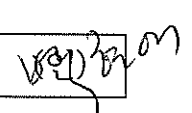


이 사 최 창 원



이 사 박 현 애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	--------	---